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42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박성훈·박충권·김성원

이상휘 • 고동진 • 김기현

이인선 • 서지영 • 김대식

정연욱 · 김종양 · 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 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 통보를 하 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제 2항 신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 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 (안 제41조의6제1항)

설정·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 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수익 기간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30"을 각각 "100"으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 중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을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 249조의6제2항,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를 받은 날"로,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류"로한다.

제4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을 사회기반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제44조제1항 중 "제230조제2항"을 "제23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3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 제4 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설정된 투 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생 략) 유) 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신 설>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 공유 재 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 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 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 ·수익 기간까지 사용·수익하 게 할 수 있다.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발행) ①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 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 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총액의 100분의 30
- ② (생략)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 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 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 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 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1
	<u>100</u>
	2
	<u>100</u>
	② (현행과 같음)
제	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 제249조의
	<u>10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u>
	우 제출일 또는 보고를 받은 날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류
	·.
	② (현행과 같음)
제	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략)

②・③ (생략)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6조, 제183조, 제186조, 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4. 투융자집합투자기구(사모 투
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
다)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
시설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u>5</u> .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제230조제1항
<u>.</u>

② (현행과 같음)